

**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**(제47조의8 관련)

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
과 그 수리용 부분품

1. 「장애인·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 
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  
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

- 가. 팔 의지(義肢), 다리의지(義肢)
- 나.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
- 다. 청각보조기기(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)
- 라.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
- 마. 점자 읽기자료
- 바. 휴대용 점자 기록기
- 사. 프린터(점자프린터로 한정한다)
- 아.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(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한다)
- 자.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
- 차. 특수키보드
- 카.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
- 타. 다리 보조기
- 파. 척추 및 머리보조기
- 하. 팔 보조기
- 거.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
- 너.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
- 더. 팔꿈치 목발
- 러. 아래팔 목발
- 머. 겨드랑이 목발
- 버.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
- 서.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

- 어.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
  - 저.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
  - 처. 침대 및 침대장비(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)
  - 커.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
  - 터.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방송법」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·청각 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
  - 피. 시각 신호 표시기
  - 허. 음성 출력 읽기 자료
  - 고.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
2.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것
- 가. 보청기
  - 나. 인공달팽이관장치(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)
  - 다. 인공후두